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 (대표 박상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4351-*****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번길 141(고잔동) 남동공단 164블럭 5로트

2. 기술명 : 광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수배전반의 이상, 위험, 사고 상태와 발생 위치를 감지하는 광전자 센서 및 제어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수배전반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 신호는 센서 전면부의 편향 렌즈를 통과하여 내부에 다수개의 수광소자로 구성된 '수광소자 모듈'에 투영되는데, 사고 발생 위치에 따라 수광소자 모듈의 한 부분으로 모아지는 광학적 원리로 발생 위치를 알아내고, 사고 신호의 데이터 연산, 분석 등을 통하여 이상 상태의 종류와 크기, 위험 정도 등 사고 징후와 사고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광전자 센서 및 제어기술

4. 기술범위

- 화재나 방전 아크로 인한 광신호와 온도, 소리(소음), 진동, 영상 등을 감지하여 사고 발생 위치와 크기, 사고 종류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광전자 센서기술
- 센서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연산하고 분석하여 이상, 위험, 사고 단계의 감지값 크기와 발생 위치를 16분할 모니터에 표시하고, 이에 따른 경보 출력, 이벤트 저장, 통신 등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 제어기술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